채용전형관리규칙

제정 2019. 11. 15. 개정 2022. 10. 31. 개정 2022. 12. 26. 개정 2023. 9. 27.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한국인터넷진흥원(이하"진흥원"이라 한다) 직원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직원의 채용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이나 기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.

제2장 채용절차

- 제3조(채용공고 등록) ① 진흥원은 채용 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및 기관 홈페이지 등에 채용공고를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.<개정 2022.10.31.>
 - ②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고기간은 공고 게시일을 제외하고 15일 이상으로 한다.<개정 2022.10.31.>
- 제4조(전형위원회 구성) ① 전형위원회 구성 시 외부평가 위원은 위원회 인원의 과반이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<개정 2022.10.31.>
 - ② <삭제 2022.10.31.>
 - ③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채용과정에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켜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.
 - 1. 직전 채용에 외부위원으로 참여한 자는 진흥원 채용에 연속하여 전형위원이 될 수 없다.(연속된 채용이 아니더라도 직종·분야별 연속된 채용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.)
 - 2. 외부위원은 동일한 채용의 여러 전형 가운데 하나의 전형에 대해서만 전형위원이 될 수 있다. <개정 2022.10.31.>
- 제5조(채용절차 사전 검증) ① 진흥원은 인사위원회를 통해 채용계획 및 채용결과에 대한 심의를 의무적으로 사전검증 하여야 하며, 이 경우 검증범위는 모든 채용으로 한다. 다만, 3개월 미만의 단기채용은 검증을 아니할 수 있다.<개정 2022.10.31., 2023.9.27.>
 - 1. <삭제 2022.10.31.>
 - ② 채용결과에 대한 심의 시 검증은 별지 제1호 채용결과 점검목록과 채용결과 증빙자료에 따라실시한다.<개정 2023.9.27.>
- 제6조(임직원 친인척 공개) ① 진흥원은 신규 채용된 자 중 채용 당시 기관 임직원의 친인척(배우자, 4촌 혈족과 인척) 인원수 및 전체 신규채용 직원수를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- ② 매 분기별로 채용된 친인척 인원을 해당 분기가 끝난 다음 달 말일까지 채용별로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<개정 2022.10.31.>
- ③ 채용 공개대상은 정규직, 무기계약직, 비정규직(계약기간 1년 이상), 채용형 인턴으로 한다.
- 제7조(가점부여) ① 직원 채용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, 전형별 가점 계상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의 승인으로 결정한다.<개정 2022.10.31.>
 - 1.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<개정 2022.10.31.>
 - 2.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<개정 2022.10.31.>
 - 3. <삭제 2022.10.31.>
 - 4. KISA주관 경시대회 및 정부기관 주관 해킹방어대회 수상자
 - 5. 진흥원 업무관련 자격증 보유자
 - 6.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<신설 2022.10.31.>

제3장 피해자 구제방안

- 제8조(구제절차) 진흥원은 직원 채용 시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때, 다음 항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시행하여야 한다.<개정 2022.10.31.>
 - ① 피해자 특정 가능 시, 직접 피해자에게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 - ②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, 점수조작 등 채용비위로 인하여 최종 탈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해 피해자를 구제하여야 한다.<개정 2022.10.31.>
 - 1. 최종 면접단계에서 피해를 본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를 즉시 채용하여야 한다.
 - 2. 필기 단계에서 피해를 본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에게 면접응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 - 3. 서류 단계에서 피해를 본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에게 필기응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 - ③ 피해자 특정 불가시,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 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를 고려하여야 한다.
 - ④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,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에는, 다음 각 호에 의해 피해자를 구제하여야 한다.
 - 1. 최종 면접단계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 그룹 면접을 재실시하여야 한다.
 - 2. 필기 단계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을 재실시하여야 한다.
 - 3. 서류 단계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을 재실시하여야 한다.
 - 4. 단계별 피해자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류시험을 재실시하여야 한다.
 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피해자 구제절차 시행을 위하여 채용전형별 탈락자의 연락처 및 심사표를 영구 보관하여야 하며, 그 밖에 채용 서류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 가능 기간이 만료된 후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.<신설 2022.12.26.>

부 칙<2019. 11. 15.>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2. 10. 31.>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2. 12. 26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탈락자 서류 보관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제5항의 규정은 해당 규정의 개정일인 2022년 12월 26일 이후 심의한 채용계획 및 신규채용 직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<2023. 9. 27.>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채용결과 점검 목록

※ 채용에 따라 전형 및 내용 변경하여 사용 가능

רנאו	저고하다		절차준수여부		
단계	점검항목	준수	미준수	해당없음	
채용	채용계획 수립 타당성(예상결원 및 정·현원 현황) 준수				
	채용계획 수립 시 절차(결재권자 결재, 인사위원회 의결 등) 준수				
	채용계획의 구체성				
	- 응시자격, 필기시험 여부,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심사기준 등				
수립	채용계획 변경 시 필요 절차 준수				
	제한경쟁채용 시 주무부처와의 사전 협의 준수				
	주무부처와의 사전협의와 동일하게 채용 실시			_	
	- - 다르게 채용한 경우 변경 내용과 그 사유를 주무부처 보고				
채용 공고	채용공고 시 블라인드 채용 준수				
	인사규정, 채용계획 등에서 정한 경력·자격요건 등과 동일하게				
	채용공고 실시				
&	채용공고 시 공고기간 준수(15일)				
 원서	채용공고 매체의 적정성(홈페이지, 알리오 등)				
- '	공고 이후 절차·기준 변경 시 재공고				
접수	변경공고 시 절차 준수				
서류	전형위원 수와 외부위원 구성의 적정성				
	채용계획상 평가항목, 배점기준, 가점부여 기준, 합격자 배수 등		_		
	심사기준 준수				
전형	전형위원 중 외부위원 과반수 참여	П			
	기피·제척·회피제도 운영				
	전형위원 수와 외부위원 구성의 적정성				
면접 전형	채용계획상 평가항목, 배점기준, 가점부여 기준, 합격자 배수 등				
	심사기준 준수				
	서류전형 위원과 면접전형위원 동일	П			
	전형위원 중 외부위원 과반수 참여				
	기피·제척·회피제도 운영				
	서류·필기·면접 등 절차에 따른 합격자 결정				
합격자 결정	합격자 결정 시 가점부여 등 평가 적정성				
	평정 집계결과와 최종 합격순위의 일치				
	동점자 발생 시 합격자 결정 기준 적용의 적정성				
	응시자격 미달, 결격사유 해당자의 합격 여부				
	최종 합격자의 변경 여부				

위와 같이 채용점검 결과를 제출하며,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00년	00월	00일

소속:	위원 :	(인)
•	., _	(-)